##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07

발의연월일: 2025. 4. 7.

발 의 자:김태선·김병주·김영환

윤준병 · 정준호 · 김영배

허 영·위성락·장철민

박홍배 · 김주영 · 박 정

이학영 • 박균택 • 윤종군

의원(15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근로기준법」상 근로자는 아니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이 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'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'해야 한다는 이른바 전속성 요 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그래서 여러 사업장을 오가며 일하는 대리운전 기사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.

앞서, 산재보험법은 2023년 7월 개정을 통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면서,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여전히 전속성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.

같은 유형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일부 노동자는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.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'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 유지·증진'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이며, 노동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기준입니다.

이에, 제77조 중 '주로 하나의 사업에'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전속성이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 노무 제공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(안 제77조).

법률 제 호

###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제1항제2호 중 "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"을 "노무를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7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	제77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
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)	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)
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	①
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	
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	
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「근로	
기준법」 등이 적용되지 아니	
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	
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(이	
하 "특수형태근로종사자"라 한	
다)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	
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	
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	
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	
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	2. <u>노무를</u>
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	
받아 생활할 것	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